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안내사항

•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바우처 양도 불가!

바우처(이용권/카드)는
본인만 소지·사용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없어요.



오직 서비스만 이용!

바우처 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품을
제공자로부터 받으면 안 돼요.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서비스 이용 월 내에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해 주세요.



당일 결제 필수!

서비스 이용 당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지참해 주셔야 해요.



일정 변경은 사전 연락!

부득이한 일정 변경은 서비스 이용
최소 1일 전까지 제공기관·제공인력에
꼭 연락해 주세요.



약속된 서비스만 요청!

계약된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제공인력의 인격 존중!

폭행, 성희롱 등 위법 행위 시
자격 상실 및 법적 처벌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 내용 직접 확인!

서비스가 끝나면 제공기록지를
확인하고 직접 서명·결제를 해요.



존중하는 호칭 사용!

제공인력의 호칭은
'선생님' 등이예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바우처

바우처 관리

- 이용자 선정을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이용 날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 전자카드 등)을 지참하여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 자격이 상실됩니다.



서비스 이용·변경·해지

-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동시에 최대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시도 지침에 따라 1인당 동시에 1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별 지원 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 회당 결제방식에 따라 당일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 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일정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일까지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 변경 희망 시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조정합니다.
- 서비스 계약 해지는 최소 7일 전까지 제공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존중

제공인력 존중

-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③항
- 제공인력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타사항

-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변화(장기부재, 이사, 질병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시군구청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및 질문 검사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예산 조정, 정책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조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